:2024.11.12.15:29 : :2025.05.15 11:46

#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

채무자 최병선에 대한 이 법원 2024하단13732호 파산선고(2024하면13732호 면책) 사건에 관하여, 이 법원은 2024. 11. 12. 10:3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2항, 제365조, 제367조, 제545조, 제549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을 통지합니다.

# 다 음

## 1. 파산결정의 주문

채무자 최병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.

### 2.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

차국환(1967. 9. 18.생,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5층 세정회계법인(양재동, 금정빌딩). 전화번호 02-2135-5741)

- 3. 채권신고기간・채권조사기일 및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・채권자집회기일・면 책이의에 대한 의견청취기일
  - ①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,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 : 각 추후지정
  - ②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: 2024. 12. 31.까지
  - ③ 채권자집회·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·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의 각 기일 및 장소: 2025. 1. 21.(화) 14: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9호 법정
  - ④ 채권자집회는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.

### 4. 간이파산의 결정

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.

#### 5. 유의사항

-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,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,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4. 12. 31.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의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워본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: : 2024.11.12.15:29 : : 2025.05.15 11:46

수 원 회 생 법 원

판사 원운재



열림용